

부산지방법원 2020. 1. 23 선고 2019가단30205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김대수, 김홍일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19. 11. 21.

판결 선고2020. 1. 23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. 7. 1. 접수 제45645호, 제4564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,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2005. 7. 1. 접수 제465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6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-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5. 29.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당사자의 관계 및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

○ D(父, 1991. 2.경 사망, 이하 '망인'이라 한다)과 E(母)은 부부이고, 원고는 그들의 셋째아들, 피고 B은 그들의 첫째아들이며, 피고들은 부부이다.

위 부부는 피고 B 아래로 원고 외에 F, G, H, I 등 모두 6남매를 두었다.

○ 부산광역시 동구 J 대 88.3m²(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, 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및 그 지상 건물(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, 이하 '이 사건 건물'라 하고,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은 1977. 5. 31.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피고 B 소유 부동산이고,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해 있는 K 대 400.9m² 및 그 지상 건물(이하 '이 사건 인접 토지 등'이라 한다)은 1991. 8. 1. 그 무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원고 소유 부동산이다.

○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 대 114.4m² 및 그 지상 건물은 1980. 3. 21.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E 및 피고 B(각 1/2지분)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, E은 2015. 7. 23. 자신의 지분을 그 무렵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의 아들인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N 대 122.3m² 및 그 지상 건물은 1985. 4. 23.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E 및 피고 B(각 1/2지분)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, E은 2015. 7. 23. 자신의 지분을 그 무렵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의 아들인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위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및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를 'O동부동산'이라 한다).

○ 부산광역시 동구 P 대 16.5m²(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)는 1995. 6. 14.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원고 소유 토지이다.

위 부동산에 2005. 7. 1.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들, 채무자 원고인 별지 등기부등본 내용과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라 한다).

나. 종래 소송 내용 등

○ 이 사건 인접 토지 등에 관하여, 원고는 2016. 7. 하순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인도, 이 사건 인접 토지 등에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(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3953), 항소(쌍방항소, 부산지방법원 2017나49603), 상고(피고들 상고, 대법원 2018다231277, 심리불속행기각)가 이루어졌다. 1심은 2017. 6. 16.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인도, 이 사건 인접 토지 등에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이를 인용¹⁾ 하고,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은 2018. 4. 19.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 금액을 받아들이는 한편 항소심에서 추가한 부분[이 사건 건물 중 일부(3.7㎡)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였다며 이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임]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이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는 2018. 8. 16.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.

○ 피고 B은 2018. 5. 24.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위 일부(3.7㎡)에 관하여 1997. 5. 3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(2018가단10063)에 제기하여 2019. 6. 12.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 등 주장의 요지

(1) 2015. 5. 하순경 E과 피고 B 사이에, E이 피고 B에게 O동부동산의 1/2지분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피고 B의 아들인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신, 피고 B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다.

E과 피고 B과 사이의 위 약속은 제3자를 위한 교환계약에 해당하는바, 피고 B은 종래부터 시종일관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(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을 통하여 위 의사를 표시한다)해 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(2)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(1)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 부분 앞서 본 종래 소송의 내용, 특히 이 사건 인접 토지 등에 관한 2건의 소송 결과와 그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 B의 E에 대한 존속상해와 관련된 재판, O동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시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.

(2)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앞서 본 종래 소송(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3953)에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동근저당권인바(위 각주 1에서 본 주문과 같이 등기원인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다)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역시 위 사건에서와 동일하므로 설정등기가 마쳐진 2005. 7. 1.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[갑 제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내용 등에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 등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]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판사문헌만

별지

1) 원고에게, 피고 B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. 7. 1. 접수 제45645호, 제4564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,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2005. 7. 1. 접수 제465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